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6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최수진 · 정성국
김예지 · 우재준 · 김소희
김승수 · 정연욱 · 안상훈
김성원 · 고동진 · 박정하
진종오 · 신성범 · 김 건
강명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.

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.

반면, 미국,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,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

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,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)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09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1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)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신탁
계좌 예치금 인출에 관한 결정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가정법원의 관장 사항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가사 사건”이라 한다)에 대한 심리 (審理)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 속관할(專屬管轄)로 한다.	제2조(가정법원의 관장 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사비송사건	2.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마류(類) 사건	나. -----
1) ~ 10) (생략)	1) ~ 10)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11)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 전법」 제25조의2제4항 에 따른 신탁 계좌 예치 금 인출에 관한 결정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